

'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

의안 번호	86
----------	----

제출일자 : '97. 10. 16

제 출 자 : 사하구청장

1. 제안이유

-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1996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- '96 예비비 지출결정액 _____ 375,601천원
 - 도로부당이득금 청구소송 패소토지배상 375,601천원

3. 관계법령 :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

'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

1. 근 거 :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

2. 예비비지출 내역

○ 총 괄

(단위 : 천원)

예 산 액 (A)	지출결정액 (B)	지 출 액 (C)	예산잔액 (A-B)
1,014,268	375,601	375,601	638,667

○ 주요지출내역

(단위 : 천원)

사 업 명	지 출 결정액	지출액	불용액	지출 일자	지 출 사 유
도로부당이득금 청구 소송패소토지 배상	375,601	375,601	0	'96.2.12	법원결정에 의한 법정필수 경비로서 예비비로 긴급지출 않을 경우 원고의 강제집행 등이 예상되며 또한 지출경비 가 매일증가하고 있어 즉시 지출하는것이 불가피함

※ 예비비 지출 조서 : 불 입

'96년도 예비비지출 조서

(단위 : 천원)

예 산 과 목			사 업 명	지 출 결정액(A)	지출원인 행위액(B)	지출액 (C)	이월액 (B-C)	불용액 (A-C)	지출 일자	사 유
세 항	세세항	목								
3332	100-140	301-04	도로부당이득금 청구 소송 패소토지배상	375,601	375,601	375,601	-	-	'96.2.12	법원결정에 의한 법정필수경비 로서 예비비로 긴급지출 않을 경우 원고의 강제집행등이 예상 되며 또한 지출경비가 매일 증가하고 있어 즉시 지출하는 것이 불가피함
도로건설	경상적 경 비	배상금등								